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
-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사회적 신용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대주주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책임을 계좌가 개설

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 계좌부를 열람·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에게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

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

-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II. 검토의견

1. 분산원장의 정의(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4호의2 신설)

- 안 제2조제3호의2에서는 “분산원장”을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안 제4호의2에서는 다시 “분산원장”에 “전자등록 정보 중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계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안 제2조제3호의2에서 “분산원장”을 정의하였음에도, 같은

조 제4호의2에서 ‘분산원장’이 아닌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계된 장부”를 포함하여 “분산원장”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어 체계상 혼란이 있음.

- ‘분산원장’이 아닌 ‘연계된 장부’를 포함하는 개념은 ‘분산원장’과 구별하여 “분산원장등”으로 약칭하도록 하고, 개정안 및 현행 제44조¹⁾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등록 정보”도 정의하는 수정하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함.

< 수 정 의 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1. ~ 3. (생략)	1. ~ 3. (생략)	1. ~ 3. (생략)
<신설>	3의2. (생략)	3의2. (생략)
4. (생략)	4. (현행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신설>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 (전자등록 정보 중 분산원장에 기재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계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4의2. ----- ---- 분산원장 V 및 그 연계장부[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대한 정보(이하 “전자등록

1) 제44조(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안)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보관된 전자등록 정보 또는 기록 정보를 멸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정보"라 한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분산 원장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 말한다. 이하 "분산원장등"이라 한다] -- -----.
5. ~ 7. (생략)	5. ~ 8. (생략)	5. ~ 8. (생략)

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의 직권말소(안 제19조의5 신설)

- 안 제19조의5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직권 등록의 “말소” 사유로 규정함.
- ‘등록’은 i) 강학상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함으로써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나, ii) 일반적으로 실정법상 등록은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인허가 제도로 높게 규제할 만큼의 필요성은 없는 경우에 허가와 신고 중간 정도인 인허가 제도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으며,²⁾ 개정안에 따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등록의 말소(취소) 등에 관련하여서는 i) 강학상 등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등록의 ‘말소’라는 표현이 바람직하고, ii) 실정법상 등록이 완화된 허가제로 운영될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바,³⁾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정안의 발행인 계좌관

2)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024, p.333

리기관의 등록의 실질에 맞게 등록의 “취소”로 수정함.

< 수 정 의 견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19조의5(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9조의5(등록의 직권취소) ① - ----- ----- ----- ----- 취소 -----. 1. ~ 5. (생략) ② (생략)

3. 분산원장의 이용방법 제한 등(안 제23조의2 신설)

○ (분산원장 이용방법 제한)

- 개정안은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안 제23조의2제1항), 분산원장 이용 기준으로 i)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산원장 이용이 적합한 주식등의 작성 및 관리에 한정하여, 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등을, iii) 원활한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3조의2제2항),

3)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사무처, 2024, p.337

- 분산원장 이용 의무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안 제73조제4항제6호 신설), 안 제23조의2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3조제4항제7호 신설).
 - 그런데, 분산원장 이용 의무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구성요건인 분산원장 이용의무 대상행위와 방법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도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기준이 엄격히 요청됨에도, 개정안은 i) **분산원장의 이용의무대상 및 방법**(안 제23조의2제1항·제2항의 “주식등의 작성 및 관리”)과 **처벌대상 행위**(안 제73조제4항제6호·제7호의 “전자등록업무”)가 **다르고**, 분산원장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는 문제가 있는바(안 제23조의2제1항·제2항),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분산원장의 이용의무 대상 및 방법과 처벌대상 행위를 명확히 수정함.
- (통지의무 및 고객계좌부 열람·출력·복사 의무)
- 또한, 개정안은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전자등록기관 사전 통지의무를 부과하고(안 제23조의2제3항),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23조의2제4항),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안 제75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 사전 통지시점이 명확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는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통지시점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로 명확히 하고, 열람·출력·복사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함.

○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전자등록주식등 간의 전환)

- 안 제23조의2제6항은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사유를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 안 제23조의2제6항제2호에서 전환 사유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이 같은 호에 예시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예측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정하고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신 설>	제23조의2(분산원장의 이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분산원	제23조의2(분산원장등의 이용 등) ① (생략) ② 전자등록기관 및 계

장의 이용은 분산원장의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산원장 이용이 적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한하며,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원활한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업무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을 이용하기 4주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좌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산원장등의 이용이 적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로 한정할 것

2. 전자등록기관의 분산원장등 참여 등 안정적인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것

3. 제2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분해서 기재 및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등록 정보의 기재 및 관리방법에 따라 분산원장등을 이용할 것

③ (생략)

④ ----- 분산원장등-----
----- 분산원장등을 이용하여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날의 4주 전-----

제73조(벌칙) ① ~ ③ (생략)	제7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u>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u> 제73조(벌칙)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 -----.	④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원안과 같음)
<신 설>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 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6. ----- -----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 에 분산원장등을 ---
<신 설>	7. 제23조의2 제2항 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한 자	7. -----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하여 분산원장등을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